제422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HACCP 조사·평가 업무의 위탁 근거 마련>
▣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6640호)

2025. 2.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Ⅰ. 개요 ····· 1

Ⅱ. 주요 내용별 검토 ····· 3

1. HACCP 조사·평가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등 ····· 3

Ⅰ. 개요

1. 장종태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6640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종태의원 등 14인

(2) 제 안 일 : 2024. 12. 18.

(3) 회 부 일 : 2024. 12. 19.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의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인증 등의 업무와 조사·평가 업무의 시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최근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음.

이에 조사·평가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적인 조사·평가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HACCP 조사·평가 업무의 위탁근거 마련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함)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사·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정기조사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모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 등임(안 제48조 및 제48조의3).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⑦ (생 략)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식품안전관리인증

현 행	개 정 안
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⑨·⑩ (생 략) ⑪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사·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며----. ----------. 1. ~ 4. (현행과 같음) ⑨·⑩ (현행과 같음) ⑪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자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 사업에 대하여 우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⑫ ----------기술지원, 인증 및 정기조사 등의 업무----------.
⑬·⑭ (생 략)	⑬·⑭ (현행과 같음)
<신 설>	⑮ 제8항에 따른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	제48조의3(교육훈련 수료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①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	<삭 제>

현 행	개 정 안
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 시행일: 2025년 1월 1일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함)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조 제1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

준적용업소의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1)]

□ 또한, 같은 조 제8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현행법 제48조의3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을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2)]

---

1)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①~② (생 략)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기 원하는 영업자의 업소를 식품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업소(이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라 한다)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그 인증을 받은 사항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⑪ (생 략)
⑫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및 인증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4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8조제12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1.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정부가 설립하거나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연구기관으로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4. 그 밖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업무를 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연구소

2) 「식품위생법」
제4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⑧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할 경우

□ 이에 따라 현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수행하고 있고, 조사·평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3]받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행하고 있음.

□ 개정안은 이처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인증 업무와 조사·평가의 수행 주체가 구분되어 있음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평가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조사·평가를 면제받은 업소에서도 식품안전 등에 관한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바,

조사·평가를 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이하 "정기조사"라 함)와 ⅱ)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1의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75조 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영업자와 그 종업원이 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48조의3(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등) ①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제48조제5항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여야 한다.</u>
② <u>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 결과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u> 다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가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를 면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평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제조·가공·조리 및 유통에 따른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 결정 등이 포함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2. 제64조에 따른 교육훈련 수료 여부
③ 그 밖에 조사·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권한의 위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9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8. <u>법 제48조제8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u> 및 인증취소 또는 시정명령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인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정기조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고시)을 마련하여 처음으로 식품 분야에 안전관리인증기준(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을 도입하였고, 1998년 8월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농림부고시)을 제정하여 축산물 분야에 HACCP을 도입한 이래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관리해오고 있음.

□ 식품 분야는 냉동식품, 배추김치, 빵류, 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에 대하여 HACCP 의무적용을 완료하였고, 축산물 분야는 도축업, 집유업, 유가공업, 알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가공업에 대하여 의무적용을 완료하였으며, 식육포장처리업은 2029년 1월까지 의무적용을 단계적으로 완료할 계획임.[4)]

□ HACCP 의무적용 대상의 단계적인 확대로 HACCP 적용업소 수는 2024년 말 기준 전체 21,180개소(식품 11,130개소, 축산물 10,050개소)로 양적으로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식품위생법」제48조의3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3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HACCP의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여야 하는 업소 수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4) [참고 1] HACCP 의무적용대상 업종 확대 현황

< 최근 5년간 HACCP 인증 현황 >

(단위: 개소)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전체	13,994	16,743	18,606	19,739	21,180
식품	7,685	9,251	10,356	10,741	11,130
축산물	6,309	7,492	8,250	8,998	10,050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 그런데, HACCP 적용업소 증가와 더불어 HACCP 적용업소가 비위생 식품을 판매·제조하는 문제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매년 제기[5]되는 등 HACCP 인증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고 있는 실정인바,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조사·평가를 정기조사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는 조사·평가로 구분하고,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정기조사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업소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리령[6]으로 정하는 일정 기간(인증 유효기간) 동안 제22조[7]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을 하지 않을 수 있도

5) "상온 방치 고기 급식 납품" 관련 언론보다('24.6.21.kbs), "위생불량 단무지" 관련 언론보도('23.10. SBS 등), "비위생 순대" 관련 언론보도('21.11. KBS, MBC 등)

6)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8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 면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8조제11항에 따라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이하 "인증유효기간"이라 한다) 동안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입·검사를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7)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출입·검사·수거 등의 조치
가.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를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

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언제라도 출입·검사·수거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감독을 통하여 HACCP 인증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첫째, 개정안은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사·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어떤 방식과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불분명하고, 빈번하게 문제 제기가 이루어질 경우 식품안전관리기준적용업소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며, 현재도 현행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관한 조사·평가를 수시로 실시할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한정하여 수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예를 들어, 식중독 등 식품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불시에 조사·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조사·평가 면제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정기조사·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나. 가목에 따른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등의 무상 수거
다.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것으로, HACCP 인증 제도에 대한 소비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HACCP 의무적용 대상의 확대로 인하여 정기조사·평가 대상 업소 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조사·평가 면제가 우수업소에 대한 동기부여라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참고로, 현행법 제48조의3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와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HACCP의 적용·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약처고시)에서는 연 1회 이상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정기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년도 정기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2년간, 95% 미만에서 90%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우대조치를 두고 있음.[8)]

---

8)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5조(조사ㆍ평가의 범위와 주기 등) 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6조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6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로 인증받은 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준수 여부를 별표4에 따라 연 1회 이상(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은 날이 속한 해당연도는 정기 조사ㆍ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해당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ㆍ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제외할 수 있다)의 방법으로 정기 조사ㆍ평가할 수 있으며, 조사ㆍ평가당시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의 신뢰성이 의심되거나 주요안전조항 검증 등에 필요한 경우 수거 및 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 제49조제1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라 이력추적관리를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선행요건 중 회수프로그램 관리를 운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②~④ (생 략)

- 식품분야 HACCP 우수업소는 2024년 말 기준 전체 평가대상 업소 4,658개소 중 1,009개소(21.6%)에 달함.

< 최근 5년간 정기 조사·평가 결과 >

(단위: 개소)

구 분	현장평가 평가점수의 백분율	2020	2021	2022	2023	2024
식품	95% 이상	85	145	78	45	47
	90%~95%	555	603	715	705	962
	85%~90%	1,776	2,212	2,568	2,447	3,280
	70%~85%	200	299	329	261	288
	70% 미만	7	44	72	60	81
계		2,623	3,303	3,762	3,518	4,658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하여 관리할 수 있다. 다만,「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제2항에 따른 축산물작업장과「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의2에 따른 연장심사 대상에 해당하고 그 연장심사 결과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 미만이거나 부적합한 경우 자체적인 조사·평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이상인 경우 2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다만, 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중 비가열식품은 제외한다.
2.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5% 미만에서 90% 이상인 경우 1년간 정기 조사·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평가 실시. 다만, 김치, 즉석섭취식품, 신선편의식품 중 비가열식품은 제외한다.
3.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90% 미만에서 85%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실시
4.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85% 미만에서 70% 이상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이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지원"을 말한다)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1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5. 전년도 정기 조사·평가 점수의 백분율이 70% 미만인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다만, 학교 집단급식소에 납품하는 경우 연 2회 이상 정기 조사·평가 및 연 2회 이상 기술지원 실시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1) 식품의약품안전처

HACCP 조사·평가 효율화를 위하여 빈도와 목적에 따라 정기와 수시 조사·평가로 이원화하는 동 개정안에는 동의하나, 제시한 개정(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법 체계상 조문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HACCP 조사·평가를 정기(위탁업무)와 수시 조사로 구분)

수시 조사·평가 대상을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문제 제기로 한정하는 경우 식품사고 발생 등 필요한 경우 수시 조사평가를 할 수 없어 안전 관리 사각지대 발생 우려됨. 또한 조사·평가 체계를 이원화하여 구분하고 있으므로, 현행법 제48조제8항을 삭제하고 조사·평가 및 교육훈련 수료 여부를 제48조의3에서 규정하는 것이 법 체계적으로 타당할 것으로 보임.

(HACCP 교육·훈련 별도 조문 분리)

교육훈련 수료여부는 HACCP 조사·평가 항목에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으므로, 동일 조문으로 관리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임.

(HACCP 관리 우수업체 조사·평가 면제 및 HACCP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조항 삭제 관련)

우수업체(총점 95% 이상) 조사·평가 면제 규정은 해썹 업체의 상시적인 안전관리 정착 및 영업자 책임 의식강화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삭제 시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됨. 또한 HACCP

업체는 인증 유효기간 연장심사 및 조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 규정은 중복 점검 등을 피하고 효율적인 행정조사를 위한 것으로 현행 유지 타당함.

2) 지방자치단체

□ 부산광역시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조항 삭제 관련) HACCP 적용업소는 자체적으로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므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줄여 점검이 더 필요한 곳에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울산광역시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조항 삭제 관련) HACCP 적용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 면제 조항을 삭제할 경우 지자체의 지도점검 대상업소 수 증가로 현장 지도점검 인력 부족에 따른 업무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음.

□ 경상남도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관련) HACCP의 준수 여부에 관한 정기조사라 함은 사후관리에 해당하고, 사후관리는 행정조치 등이 따르므로, 식품제조업소 등 인·허가 기관에 임무를 부여하여 지방 이양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맞는 법 개정으로 지향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업무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감 부여 및 예산 수립에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3)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자체 등의 HACCP 업체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면제 규정 삭제 관련) HACCP 적용업소는 매년 식약처, 인증원의 조사평가를 받고 있어, 해당 규정 삭제 시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수거 등이 이중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HACCP 적용업소라 하더라도 식약처는 기획, 수시점검을 통하여 위생관리를 하고 있음.

(교육훈련 수요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관련) 조사·평가 시 교육수료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조항은 불필요함.

(우수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삭제 관련) 우수업소 우대조치 부여 및 미흡업체의 집중관리와 한정된 조사·평가 담당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차등관리 제도의 운영이 필요함.

4) 관련 협회

□ 식품산업협회

(소비자 문제 제기 시 수시평가 관련)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른 조사·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하고, 빈번한 수시 평가로 인한 산업계 부담 및 행정력 낭비가 우려됨.

(우수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삭제 관련) HACCP 우수업소의 동기부여 저하가 우려되고, 우수업소도 불시평가가 가능하므로 현행 제도로도 충분한 관리체계 유지가 가능하며, 한정된 평가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관리미흡 업소에 조사·평가를 집중하는 것이 합리적임.

□ 한국유가공협회

(소비자 문제 제기 시 수시평가 관련)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의 문제 제기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불명확하고, 현재 HACCP 적용업소는 조사·평가 외에도 소비자민원 발생시 연간위생감시 등 수시로 지도·점검을 받고 있음.

(우수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삭제 관련) 우수업소의 HACCP 유지관리를 위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필요함.

□ 한국육가공협회

(HACCP 준수 여부에 관한 조사·평가 관련) 인증 및 조사·평가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안전성 확보에 합리적임.

(우수업소에 대한 우대조치 삭제 관련)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는 식품업계의 자발적인 인증기준 준수의지 강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1】	HACCP 의무적용대상 업종 확대 현황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식품</th><th rowspan="2">구분</th><th colspan="2">축산물</th></tr>
<tr><th>대상</th><th>적용시기</th><th>대상</th><th>적용시기</th></tr>
<tr><td rowspan="9">완료</td><td>▪ 어묵
▪ 냉동수산식품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 빙과류 ▪ 비가열음료
▪ 레토르트식품</td><td>‘06.12-‘12.12</td><td rowspan="13">완료</td><td>▪ 도축업
(농식품부 위탁)</td><td>‘02.6-‘03.6</td></tr>
<tr><td>▪ 배추김치</td><td>‘08.12-‘14.12</td><td>▪ 집유업
(농식품부 위탁)</td><td>‘14.7-‘16.1</td></tr>
<tr><td>▪ 즉석조리식품(순대)</td><td>‘16.12-‘17.12</td><td>▪ 유가공업</td><td>‘15.1-‘18.1</td></tr>
<tr><td>▪ 매출액 100억 이상 제조업체</td><td>‘17.12-</td><td>▪ 알가공업</td><td>‘16.12-‘17.12</td></tr>
<tr><td rowspan="7">▪ 어육소시지
▪ 음료류
▪ 초콜릿류
▪ 특수용도식품
▪ 과자·캔디류
▪ 빵류·떡류
▪ 국수·유탕면류
▪ 즉석섭취식품</td><td rowspan="7">‘14.12-‘20.12</td><td>▪ 식용란선별포장업</td><td>‘18.4-</td></tr>
<tr><td>▪ 식육가공업</td><td>‘18.12-‘24.12</td></tr>
<tr><td rowspan="4">• 1단계(‘18.12) : 연매출액(’16) 20억원 이상
• 2단계(‘20.12) : 연매출액(’16) 5억원 이상
• 3단계(‘22.12) : 연매출액(’16) 1억원 이상
• 4단계(‘24.12) : 1～3단계 외 모든 업체</td></tr>
<tr><td>▪ 식육포장처리업</td><td>‘23.1-’25.1</td></tr>
<tr><td rowspan="2">• 1단계(‘23.1) : 연매출액(’20) 20억원 이상
• 2단계(‘25.1) : 연매출액(’20) 5억원 이상</td></tr>
<tr><td rowspan="3">진행중</td><td>▪ 식육포장처리업</td><td>‘23.1-‘29.1</td></tr>
<tr><td rowspan="2">• 3단계(‘27.1) : 연매출액(’20) 1억원 이상
• 4단계(’29.1) : 1～3단계 외 모든 업체</td></tr>
</table>

【참고 2】	HACCP 인증제도

□ 개요

○ (정의)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은 식품의 원재료부터 제조·가공·조리·유통까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관리시스템임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 인정(도입) 전 세계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식품안전관리시스템(사전관리)으로 받고 있는 HACCP 제도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의 권고에 따라 '95년 우리나라 도입하여 '06년부터 단계별 의무적용 추진

- 우리나라 HACCP제도는 다소비식품·어린이기호식품 등에 대해 인증취득 없이 생산·유통을 금지하는 의무인증(법정인증) 운영

* 인증 업체수 : ('99) 5개소 → ('07) 118개소 → ('14) 5,760개소 → ('23) 19,739개소

□ 해썹 인증 및 사후관리 업무 절차

○ 해썹 인증(재인증)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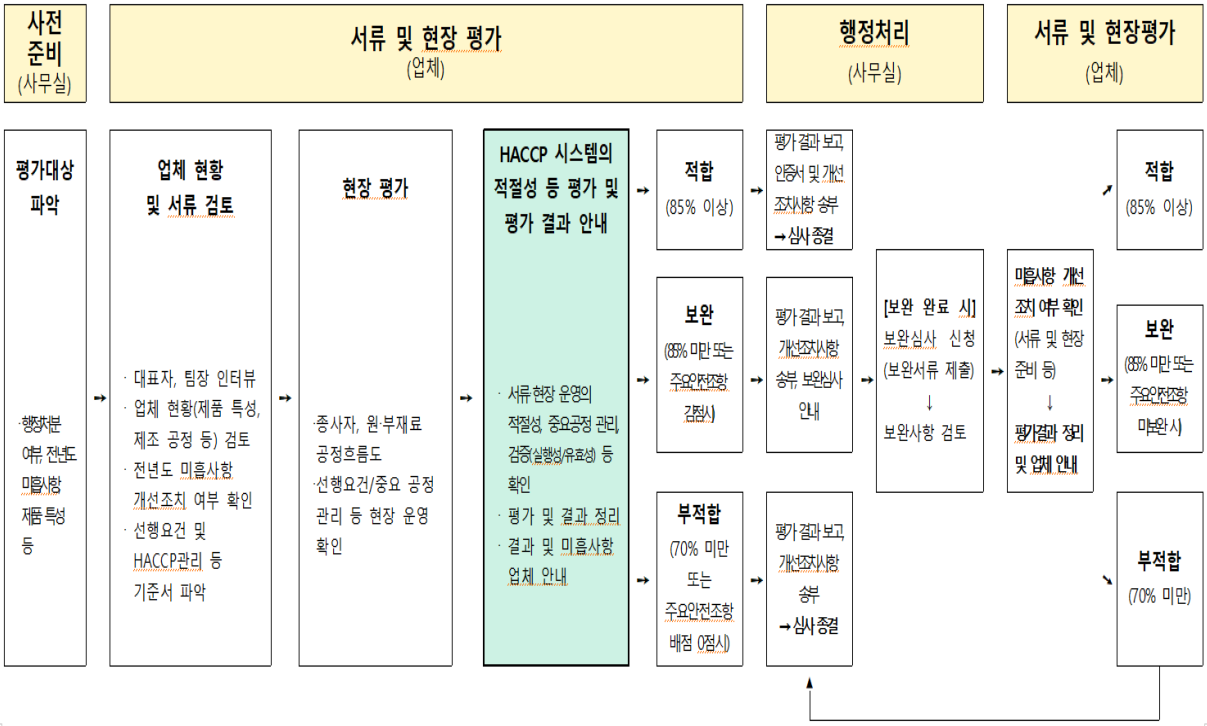

○ 해썹 조사 · 평가 업무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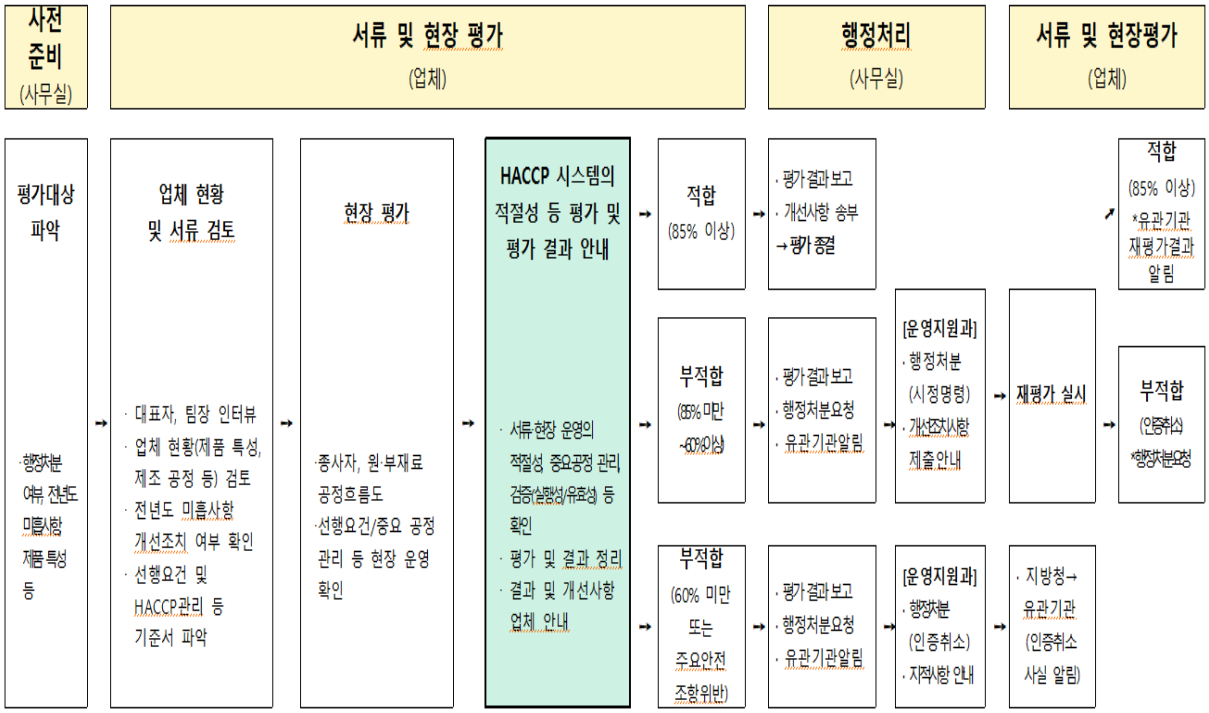
사전 준비 (사무실)
서류 및 현장 평가 (업체)
행정처리 (사무실)
서류 및 현장평가 (업체)
평가대상 파악
·행정처분 여부, 전년도 미흡사항 제품 특성 등
업체 현황 및 서류 검토
· 대표자, 팀장 인터뷰
· 업체 현황(제품 특성, 제조 공정 등) 검토
· 전년도 미흡사항 개선조치 여부 확인
· 선행요건 및 HACCP관리 등 기준서 파악
현장 평가
·종사자, 원·부재료 공정흐름도
·선행요건/중요 공정 관리 등 현장 운영 확인
HACCP 시스템의 적절성 등 평가 및 평가 결과 안내
· 서류·현장 운영의 적절성, 중요공정 관리, 검증(실행성/유효성 등 확인
· 평가 및 결과 정리
· 결과 및 개선사항 업체 안내
적합 (85% 이상)
부적합 (85% 미만 ~60%이상)
부적합 (60% 미만 또는 주요안전 조항위반)
· 평가결과보고
· 개선사항 송부
→평가종결
· 평가결과보고
· 행정처분요청
· 유관기관알림
· 평가결과보고
· 행정처분요청
· 유관기관알림
[운영지원과]
· 행정처분 (시정명령)
· 개선조치사항 제출안내
[운영지원과]
· 행정처분 (인증취소)
· 지적사항 안내
재평가 실시
· 지방청→ 유관기관 (인증취소 사실 알림)
적합 (85% 이상)
*유관기관 재평가결과 알림
부적합 (인증취소) *행정처분요청